

# 2002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수정예산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2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·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,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,9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.9%인 5,46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,925백만원, 특별회계가 2,539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백만원, 지방양여금 4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2,52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 
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2,538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00백만원, 사업예산 3,8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예비비등 기타 △1,06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,  
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,538백만원, 예비비등 기타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자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